

[밀양강 푸르지오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공급개요

- 주택명 : 밀양강 푸르지오
- 사업장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512-1 외 15필지
- 공급규모 : 지하2층, 지상29층 아파트 6개동 총 523세대
- 주택형 : , 74㎡, 84㎡A, 84㎡B

■ 특별공급 일정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	2017.07.28.(금)	푸르지오 홈페이지내 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
모델하우스개관	2017.07.28.(금)	평택시 비전동 1102-3번지
접수일자	2017.08.02.(수) 10:00~14:00	견본주택 방문접수(인터넷 청약접수 불가)
당첨자발표	2017.08.02.(수) 16:00	당사 견본주택에 게재
동호수 발표	2017.08.10.(목)	당사 견본주택에 게재

* 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당사 홈페이지(www.prugio.com)에 게시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지연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족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수도권 거주자로 당첨 시)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 (국가유공자), 3호(국가보훈대상자), 8호(장기 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장애인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대상자)에 해당하는 차종 특별공급별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p>* 추천기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인 : 지역 장애인복지과 ②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 지역보훈처청 ④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지방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수배점) 및 계약 불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추첨에 의함. - 추첨 대상은 해당기관에서 추첨 받은 자 전체임. 동일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 지역(평택시) 거주자가 우선함.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입주선정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 선정하며, 동호수 배정업무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 함.(동·호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분	밀양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		인감증명서	본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인경 반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input type="radio"/>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 (www.apt2you.com)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일반 (기관축전)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장애인 복지카드 등 기타 서류로 접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청약자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input type="radio"/>	인감도장	청약자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input type="radi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input type="radio"/>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input type="radio"/>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본상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점,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호수 결정 방법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고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음.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 (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